

네트워크 환경에서의 디지털복제와 공정사용 법리 적용의 문제점

The Issues of Digital Copying and Application of Fair Use in the Network Environment

홍재현(Jae-Hyun Hong)

목 차

1. 서 론	3. 3 도서관 등에의 복제
2. 디지털저작물의 저작권 제한	3. 4 학교교육목적상에의 복제
2. 1 저작권 제한의 의의	4. 디지털복제에 대한 제도적 통제 방안
2. 2 저작권 제한을 위한 공정사용	4. 1 복제보상의 필요성
3. 디지털복제와 관련한 공정사용의 문제점	4. 2 복제보상의 방법론
3. 1 디지털복제	4. 3 저작권집중관리제도
3. 2 사적 복제	4. 4 사적복제보상금제도
	5. 결 론

초 록

정보기술의 혁신과 네트워킹 기술의 발달에 따라 디지털복제, 디지털전송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아날로그환경에서와 마찬가지로 디지털환경에서도 공공의 이익과 문화발전을 위하여 저작권을 제한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본 연구는 첫째, 공정사용을 위한 저작권 제한의 국제적인 동향과 미국, 일본 등의 입법례를 살펴 보았다. 둘째, 최근 국제적으로 쟁점이 되고 있는 RAM 저장과 화면현시와 관련된 디지털복제의 문제를 검토하였다. 셋째, 네트워크환경에서의 사적 복제,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 학교교육목적의 복제에 관련하여 공정사용 법리를 적용할 시 제기되는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아날로그환경을 염두에 두고 제정된 저작권 제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작권법이 개정되어야 함이 드러났다. 끝으로 본 연구는 디지털 사적 복제를 통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저작권집중관리제도'의 활성화 방안과 '사적복제보상금제도'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ABSTRACT

The digital copying and digital transmission are rapidly increasing with the innovation of information technology and the development of networking technology. But it is inevitable to limit copyright for the public benefit and cultural development in the digital environment in like manner with the analog environment. First, this study examined the international trends and regulations relating to the copyright limitations in the U.S. and Japan for the fair use. Second, it dealt with the problems of the digital copying relating to the temporary storage in RAM and screen display that are recently becoming international issues. Third, it concretely explored and analyzed the problems according to the application of the fair use of the private copying, the library copying, and the copying for the purpose of school education in the network environment. In conclusion, to solve these problems that occurred from regulations in the analog environment is needed the revision of the existing copyright law in Korea. Finally, this study suggested 'the copyright collective management system' and 'the private copying levy system' as the systemic devices to control the digital private copying.

* 중부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전임강사
접수일자 1997년 10월 28일

1. 서 론

정보기술의 혁신과 전자통신 네트워크의 발달에 따라 오늘날 정보는 '디지털 방식'에 의해 축적된 디지털저작물(digital works)과 디지털 형태로 전달 또는 이용되고 있다. 디지털저작물은 디지털 방식에 의하여 정보가 전자적 매체에 고정된 것을 말하며, 디지털 방식이란 모든 형태의 정보가 컴퓨터에 의해 조작, 처리될 수 있는 0과 1의 binary 상태로 변환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디지털저작물의 특성은 과거의 아날로그 방식의 인쇄형태 저작물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데이터베이스, CD-ROM 등은 책보다 신속하고 쉽게 복제될 수 있고, 그 내용 및 체제를 쉽게 수정, 편집, 변경, 조작하여 새로운 저작물 또는 2차적 저작물로 작성할 수 있으며, 네트워크를 통해 전국 또는 전세계적으로 동시에 그 내용을 전송 또는 배포할 수 있으며, 디지털복제 시 그 품질면에서 변화가 없어 원저작물과 비교하여 볼 때 질에 있어서 하등의 차이가 없는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때문에 디지털복제물이 원저작물을 대체하는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그로 인한 저작권자의 경제적 이익의 심각한 타격이 우려되고 있다. 따라서 디지털복제 기술이 대중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저작물 이용자와 저작권자의 이해조절이 더욱 요구되고 있다.

저작권이란 시, 소설, 희곡, 학술적 저작물 등의 어문저작물, 음악, 연극, 건축, 사

진, 영화, 도형, 컴퓨터 프로그램 등과 같은 저작물에 대하여 저작자가 가지는 권리다. 저작권 제도의 목적은 전달하고자 하는 아이디어나 메시지를 가진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정보미디어를 중개해서, 그 아이디어나 메시지를 표현하고 유통시키는 것을 장려하는데 있다. 즉 정보유통의 원활화와 활성화를 기함으로써, 문화, 예술, 과학, 기술의 발전을 촉진시키고 풍요로운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그리하여 저작권법에서는 저작권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저작재산권 규정을 마련함과 동시에 정보유통을 촉진시키고 원활한 정보이용을 도모하기 위해서 저작권의 제한 또는 공정사용의 법리를 적용하고 있다. 정보와 지식의 확보가 개인 또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중요하게 인식되는 정보사회에 있어서 공익을 위한 공정사용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디지털저작물을 일정 조건 하에서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저작물에 대하여 일반저작물에 적용되고 있는 바와 마찬가지의 공정사용이 적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디지털저작물은 일반저작물과는 매우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어 기존의 공정사용의 법리를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가 의문시된다.

저작권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디지털도서관의 구축을 추진하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디지털복제와 그와 관련한 공정사용의 법리 적용에 따른 문제점들은 직시해야 할 매우 중요한 현안이 아닐 수 없다. 21세기 디지털시대를 맞는 정보관리기

관들은 디지털저작물의 제작, 전송 및 이용에 대한 저작권법의 이해와 문제점을 정확히 인식하고 앞으로 합법적인 대처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에 최근 전자 저작권에 있어서 국제적으로 쟁점이 되고 있는 디지털복제, 특히 RAM 저장 및 화면현시의 문제를 검토하고자 한다. 그리고 디지털저작물의 제작 및 이용과 관련한 사적 복제, 학교교육목적상의 복제, 도서관 등의 복제에 대한 공정사용 법리의 적용상에서 제기되는 문제점을 제시하고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네트워크 환경에서의 사적 복제의 통제는 저작권법으로만 매우 어렵고 불가능하다. 따라서 법적 장치와 더불어 디지털 사적 복제를 통제할 수 있는 효율적인 보상제도 즉, 일정한 경우 저작권자에게 적절한 경제적 보상을 하고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에 복제보상의 필요성을 밝히고 그 방법론을 검토하고자 하며, 끝으로 복제보상의 제도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디지털저작물의 저작권 제한

2. 1 저작권 제한의 의의

저작권은 저작자의 재산적 손실을 방지하는데 있다. 즉 저작권은 저작자 자신이 창작한 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배타적인 권리를 저작물의 창작자에게 부여하고, 그

저작물을 다른 사람이 이용함에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얻는 것을 필요로 하며, 저작권자로부터 그러한 허락을 얻지 않고 이용하는 행위를 위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타인이 창작한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을 저작자의 이용허락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무단으로 복제하거나 배포하거나 사용한 경우, 이는 저작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행위로서 간주된다. 그래서 저작권자는 무단으로 자신의 저작물을 복제 또는 사용한 타인을 상대로 민사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피해자는 형사상 처벌대상이 될 수도 있다. 또한 변경에 의하여 2차적저작물을 작성할 경우에는 원저작자의 저작권이 미치게 되므로 원저작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저작물에 수록되어 있는 정보는 공공재(public goods)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고, 본질적으로 저작물의 정보는 자유롭게 유통되어야 한다. 만약에 저작물에 저작자의 독점적인 권리를 영구히 미치게 하고 저작물을 이용할 때는 어떠한 경우 이더라도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면, 일반공중이 그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이 매우 불편해지고 문화의 발전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저작자의 재산상의 독점권을 일정한 조건 내에서 어느 정도 제한하여 정보의 원활한 이용 및 정보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자는 것이 저작권의 제한과 그 제한의 하나인 공정사용(미국에서는 fair use, 영국에서는 fair dealing을 의미함)의 의도이다.

저작권의 제한은 광의로는 저작자의 배타적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서, 저작재산권의 제한과 법정허락(미국의 경우는 강제허락 (compulsory license))이나 시간적인 제한인 보호기간의 규정 및 공정사용이 포함된다.

저작재산권의 제한이나 공정사용은 일정한 조건에 한하여 저작물의 자유로운 이용을 허락하여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을 면제하는 것이므로, 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저작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사용해도 저작권 침해로 간주되지 않는다.

2. 2 저작권 제한을 위한 공정사용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일정한 권리 즉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을 보호하여 저작자의 창작활동을 진작시키는 것이 주된 목적의 하나이지만, 동시에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복제권, 배포권, 전시권 등의 저작권자의 배타적인 권리(exclusive rights)를 제한하는 이중적 목적을 추구하고 있다.

디지털 환경에서도 아날로그 환경과 마찬가지로 공공의 이익과 문화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저작권을 적절히 제한하는 것이 불가피하게 요구될 것이다.

저작권 제한의 법리 또는 공정사용의 법리에 입각한 저작권자의 배타적인 권리의 제한 및 예외조항에 대한 국제적인 동향과 각국의 입법례를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저작권의 국제적인 보호를 목적으로 체결된 가장 오래되고 중요한 저작권 협약으로서 인식되고 있는 베른협약 (정식명칭은 「문학적 예술적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베른협약」(Bern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Literary and Artistic)임)은 제한과 예외(limitations and exceptions)에 관한 일반조항을 따로 두지 않고, 각 조항에서 구체적인 경우를 상정하여 제한과 예외를 적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베른협약 제9조 제2항은 저작자의 복제권에 대해서 “복제가 당해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을 저해하지 아니하고, 동시에 그 저작자의 합법적인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제한할 것을 허용하고 있다. 그리고 베른협약 제10조 1항 및 3항은 저작물의 인용이 저작자의 권리제한으로서 합법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인용 그 자체가 공정한 관행에 합치해야 하고, 목적에 비추어 정당화되는 범위를 넘어서는 안되며, 저작자의 이름과 출처를 밝혀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새로운 세계무역질서를 관장하려는 취지하에 1995년에 출범한 세계무역기구(WTO : World Trade Organization)에 의해 발효된 무역관련지적재산권(TRIPs : Trade 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협정은 제13조에서 “회원국은 배타적 권리에 대한 제한 또는 예외를 저작물의 통상적 이용을 저해하지 아니하고 권리자의 합법적인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일부 특별한 경우

로 한정하여야 한다”고 그 제한과 예외조항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세계지적소유권기구(이하 WIPO: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라 한다)의 주관으로 디지털기술 및 네트워크 기술 등의 신기술에 따른 급변하는 정보환경에 대응하고 아날로그 시대에 마련된 기존의 베른협약을 보완하기 위해 1991년부터 논의 끝에 1996년 말에 체결되어 각국의 비준이나 가입을 기다리고 있는 WIPO저작권조약(WIPO Copyright Treaty)에서는 제10조에서 제한과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 그 1항에서는 “체약당사자는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normal exploitation)을 저해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합법적인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특별한 경우에, 이 조약에서 문학 예술 저작물의 저작자에게 부여한 권리에 대한 제한과 예외를 국내법으로 규정할 수 있다”고 하고, 그 2항에서는 “체약당사자는 베른협약을 적용할 경우에, 동 협약에서 규정한 권리에 대한 제한과 예외를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을 저해하거나 저작자의 합법적인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특별한 경우로 한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복제권 뿐만 아니라 공연권이나 권리가 확장된 공중전달권(rights of communication to the public, 제8조) 등 각 권리에 대한 제한과 예외는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의 저촉여부, 저작자의 합법적인 이익의 저해 여부, 일정한 경우의 한정여부를 의미하는 이른바 3단계 테스트

(three step test)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적용 불가능함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미국 저작권법은 일정한 조건에 한하여 이용자들이 저작물을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게 허락하여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을 면제하는 공정사용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그리하여 이를 제107조(1988)에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 106조 및 제 106조A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비평, 논평, 시사보도, 교수(학급용으로 여러 부를 복제하는 것도 포함), 학문 또는 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을 복제물이나 음반으로 제작하거나 기타 제 106조 및 제106조의 A에서 규정한 방법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해서 공정사용하는 행위는 저작권침해가 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 저작물 이용의 ‘공정사용’ 여부는 (1) 이러한 이용이 상업적 성격의 것인지 또는 비영리적인 교육목적을 위한 것인지를 여부를 포함한, 그 사용의 목적 및 성격 (2)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의 성격 (3)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 전체에 대해 사용된 부분이 차지하는 양(amount)과 상당성(substantiality) (4) 그 이용이 저작권으로 보호받는 저작물의 잠재적인 시장이나 저작물의 가치에 미치는 영향과 같은 요소에 의해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 규정은 복제 뿐만 아니라 다른 사용의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다. 또한 미국 저작권법(1995)은 공정사용 항목에 이어 제108조에서 제120조까지 특정사용으로

지정하여 저작권자의 배타적인 권리를 제한하고 있다. 도서관 및 기록보존소에 의한 복제(제108조), 특정 복제물이나 음반의 이전의 효력(제109조), 특정 실연 및 현시에 대한 책임면제(제110조), 2차방송(제111조), 일시적 기록물(제112조), 회화, 도면 및 조각저작물에 대한 배타적 권리의 범위(제113조), 음반물에 대한 배타적 권리의 범위(제114조), 비연극적 음악저작물에 대한 배타적 권리의 범위 : 음반의 제작 및 배포를 위한 강제허락(제115조), 주화투입식 전축에 의한, 공연에 관련한 협의 이용허락(제116조), 배타적 권리에 대한 제한 : 컴퓨터 프로그램(제117조), 배타적 권리의 범위 : 비상업적 방송에 관련된 특정저작물의 사용(제118조), 배타적 권리에 대한 제한 : 가정시청을 위한 수퍼스테이션과 네트워크 방송국의 2차송신(제119조), 전축저작물에 대한 배타적 권리의 범위(제120조)의 조문이 이에 해당된다.

한편 우리나라와 일본의 저작권법에서는 공정사용에 관한 규정이 조문화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저작권법의 목적에서는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한국 저작권법 제1조)”, “공정한 이용에 유의함(일본 저작권법 제1조)”을 목적으로 한다고 뚜렷하게 밝히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와 일본 저작권법은 대륙법계의 국가와 같이 모두 저작권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어 저작권이 미치지 못하는 특정사용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이를 테면 한국 저작권법에서는 제22조에서 제35조까지의 저작권의

제한 조문 중 제33조까지가, 일본 저작권법에서는 제5관의 저작권 제한에 포함된 제30조에서 제50조에 이르는 조문 중 제47조까지가 이에 해당된다. 저작권의 제한 규정의 각조항은 “공정사용의 관념이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특히 적당한 범위(제24조), 공정한 관행(제25조) 등의 조문으로부터 저작물 이용을 들러싸고 상반된 이해관계의 균형을 맞추도록 하는 과정에서 공정사용의 법리는 저작권 제한의 일반원칙으로서 구체적인 사건을 해결하는 가운데 반영되고 있다.

일본 저작권법과 한국 저작권법에서 저작권이 제한되는 구체적인 경우를 각각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일본 저작권법에서는 사적사용을 위한 복제(제30조), 도서관 등에 있어서의 복제(제31조), 인용(제32조), 교과용 도서 등의 게재(제33조), 학교교육프로의 방송 등(제34조), 학교 등 교육기관에 있어서의 복제(제35조), 시험문제로서의 복제(제36조), 점자에 의한 복제 등(제37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복제 등(제38조), 시사문제에 관한 논설의 전재 등(제39조), 정치상의 연설 등의 이용(제40조), 시사사건의 보도를 위한 이용(제41조), 재판절차 등에 있어서의 복제(제42조), 번역, 번안 등에 따른 이용(제43조), 방송사업자 등에 의한 일시적 고정(제44조), 미술저작물 등의 원작품 소유자에 의한 전시(제45조), 공개된 미술저작물 등의 이용(제46조), 미술저작물 등의 전시에 따른 복제(제47조), 프로그램저작물의 복

제물 소유자에 의한 복제(제47조의 2, 1985년 법 제62호에 의하여 추가)의 경우에는 저작권이 제한된다.

또한 우리나라 저작권법에서는 이용자의 공정하고 원활한 정보이용을 도모하고자 하는 관점에서 재판절차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이거나 입법 행정의 목적을 위하여 복제하는 경우(제22조), 학교교육목적 등을 위하여 이용하는 경우(제23조), 시사보도를 위하여 이용하는 경우(제24조), 공표된 저작물을 인용하는 경우(제25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공연 방송하는 경우(제26조), 사적 이용을 위하여 복제하는 경우(제27조), 도서관 등에서 복제하는 경우(제28조), 시험문제로서 복제하는 경우(제29조), 점자로 복제하는 경우(제30조), 방송사업자가 자체방송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녹음 녹화하는 경우(제31조), 미술저작물 등을 전시 또는 복제하는 경우(제32조), 학교교육목적상 또는 사적 이용 등을 위하여 저작물을 번역 편곡 개작하는 경우(제33조) 저작재산권이 제한된다.

3. 디지털복제와 관련한 공정사용의 문제점

3. 1 디지털복제

문현이나 잡지의 기사, 또는 초록 등의 인쇄형태 기반 저작물에 대한 디지털화가 가속화되고 학교, 도서관, 가정이나 사무

실에서의 인터넷 등의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한 디지털 저작물의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서, 디지털복제에 따른 저작권 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문제의 심각성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디지털복제가 아주 쉽고 신속하며 그리고 원본과 품질에 있어 전혀 차이없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동시에 유통될 수 있다는데 있다.

그러나 디지털복제에 대한 정의는 아직껏 어느 법령에서도 내려져 있지 않다. 한국 저작권법상 복제는 “인쇄, 사진, 복제, 녹음, 녹화 등의 방법에 의한 유형적인 복제”(제16조)라고만 정의되어 있다. 다만, 세계복제권기구(IFRRO: International Federation of Reproduction Rights Organizations)는 디지털복제란 인쇄형태를 기반으로 한 저작물을 기계가독형으로 축적, 디스플레이, 조작 또는 복제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영국의 출판협회(Publishers Association, 1992)는 스캐닝 기술이나 기타 처리방법에 의해 인쇄자료를 전자데이터베이스에 복제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종합해 보면 디지털복제란 인쇄형태를 기반으로 한 저작물을 스캐닝하거나 워드프로세서에 rekeying하는 등의 처리방법에 의해 기계가독형으로 축적, 디스플레이, 조작 또는 복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겠다(홍재현, 1996, 64).

따라서 종이기반 저작물에 적용되는 복제의 정의를 현재 적용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인데, 기존의 복제의 정의가 디지털

정보에 충실히 적용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문제이다.

디지털저작물은 디지털기술과 통신네트워킹의 진보로 인하여 종래의 인쇄형태 저작물이 복제되는 경우와는 달리 수많은 거래에 의해 만들어지고 있다. NII(National Information Infrastructure) 보고서에서는 디지털복제물이 만들어지는 경우를 다음과 같이 열거하고 있다.(<http://www.gcwf.com/ftp/tpnii.tx>)

- ① 저작물이 디스크(켓), ROM 또는 RAM에 일시적으로 저장될 때
- ② 인쇄물이 디지털 파일로 스캐닝될 때
- ③ 저작물이 디지털화될 때
- ④ 디지털화된 파일이 전자게시판(Bulletin Board System : BBS) 또는 다른 서버(server)로 다운로드(download)될 때
- ⑤ 컴퓨터 통신망의 사용자로부터 다른 사용자로 파일이 전송될 때 - 예를 들어 저작자가 하나의 파일을 인터넷으로 출판사에 전송하면 일반적으로 최소한의 복제물은 저작자의 인터넷 서버에, 출판사의 인터넷 서버에, 출판사의 랜서버에, 편집자의 마이크로 컴퓨터에 만들어지게 된다. 중간 서버들의 이러한 복제는 단지 일시적에 불과하므로 복제권에 의해 포괄되지 않는다고 주장되어 왔다. 그러나 만일 복제물이 일시적 이상

존재한다면 복제권이 연루될 것이다.

⑥ 최종이용자의 컴퓨터가 전자게시판이나 인터넷 호스트와 같은 다른 컴퓨터에 있는 파일을 읽기 위한 수신 전용 터미널(dumb terminal)로 사용될 때.

그러나 복제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이 반드시 저작권 침해를 발생시킨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디지털복제가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은 경우, 공정사용으로서 저작권자의 배타적 권리가 제한되어 침해의 면책을 받는 경우, 또는 아주 사소할 정도로 간주될 만큼 적은 규모의 경우에는 침해의 책임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다만, 이러한 경우를 벗어나서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을 저작권자에게 저작권 사용료의 지급 또는 허락없이 디지털 형태로 복제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분쟁을 일으킬 소지가 매우 크다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최근 종이 등에 의한 영구적 복제 대신에 플로피디스켓이나 하드디스크 등의 컴퓨터 저장매체에 일시적으로 저장하거나 전송받는 경우가 증가하게 되어서 복제의 개념이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다시 말해 컴퓨터 RAM의 일시적 저장(temporary storage)을 복제로 볼 것인가. 또는 화면에 현시(display)하는 것도 복제로 볼 것인가 하는 문제가 국제적인 쟁점

8) 유사라, 멀티미디어 정보 관련 기술과 표준안에 대한 고찰. 정보관리학회지 제13권 제2호, 1996.12, PP. 55-68.

9) 한상완 등, 국가디지털도서관 구축계획에 관한 연구. 서울 : 국립중앙도서관, 1996, PP. 77-79.

으로 부각되고 있다.

전통적으로 인정되는 복제는 매체에 영속적으로 고정된 것(permanent fixation)을 의미한다. 그러나 디지털 기술이 발전하면서 매체에 일시적 또는 순간적으로 저장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른바 PC 통신이나 인터넷 이용자가 컴퓨터 화면을 브라우징(browsing)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컴퓨터 메모리에 저장하는 경우, 고객의 각종 이용행위 과정 중 온라인 사업자의 서버 메모리에 저장하는 경우, 컴퓨터 프로그램 복제물을 정당하게 구입한 사람이 자신의 컴퓨터에 부팅할 때마다 RAM에 저장하는 경우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행위는 현재의 기술로는 불가피한 것이라 하겠지만, 어쨌든 RAM에 저장하는 것이나 컴퓨터 스크린에 현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복제행위에 해당된다.

베른협약에서는 제9조 1항에서 "... 문학적 및 예술적 저작물의 저작자는 어떠한 방법이나 방식으로든 저작물의 복제를 허락할 배타적 권리를 가진다"는 복제에 대한 일반규정만을 두고 있다. 때문에 RAM 저장이 베른협약상 복제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해석의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이다.

1996년 12월 WIPO 회원국 160여 국가들에 의해 채택된 WIPO 저작권조약에서는 RAM 저장을 복제권의 범위 내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베른협약 의정서안(이하 WIPO 저작권조약안이라 한다)의 제7조에 입안되었던 복제권 규정이 삭제된 채 채택되었다. 다만, 저작

권 및 저작인접권에 관한 WIPO 외교회의에 참여한 160여 개국이 합의한 합의문서(agreed statement)만을 남기게 되었는데, 이 합의문서에서는 베른협약 제9조의 복제권 규정을 디지털 환경에도 적용하며, 저작물을 전자매체에 디지털 형태로 저장하는 것을 베른협약 제9조의 복제로 본다고 언급하고 있을 뿐, 저작권조약안 제7조에서 규정하였던 일시적 복제 등에 관하여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 결국 RAM 저장을 베른협약 제9조의 복제범위에 포함시키기 위하여 마련되었던 저작권조약안 제7조가 최종 조약의 채택과정에서 삭제되고 합의문서에서도 명백히 언급되지 않은 현상황을 고려해 볼 때, RAM 저장을 베른협약 제9조의 복제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일 것이다. 또한 미국의 경우에도 NII의 최종보고서에서는 이를 복제로 보았으나, 저작권보호법안에서는 RAM 저장은 복제권의 범위에서 제외되었다.

그 주된 이유는 조약이나 저작권법상에서 일시적 저장을 복제라고 규정하고 저작자 등의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권리가 미치도록 한다면 그 파급효과가 엄청날 것이기 때문이다.

앞으로 저작권법상 RAM 저장을 복제라고 규정한다면, 인터넷상의 대부분의 통신이 저작권법상의 복제권 침해행위가 될 것이며, 그로 인하여 이용자들은 개개의 통신, 부팅시마다 권리자의 허락을 얻어야 하는 불편함이 따를 것이다.

또한 이를 복제의 개념에 넣어 배타적

인 권리를 부여한다고 하면, 복제와 관련한 각종 권리제한, 특히 사적 복제, 도서관 복제 등의 규정을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결국 RAM에 일시적으로 저장되는 경우를 복제권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 따라서 복제의 개념을 전자장치의 도움으로 저작물을 고정적 기억장치에 입력하거나, 그러한 기억장치에 입력되어 있는 저작물을 출력하는 행위까지만을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일시적 저장이 단지 저작물을 지각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해지는 경우 또는 일시적 저장이 기술적 과정의 일환으로서 순간적이거나 부수적인 성격을 가지는 경우 등은 복제권이 미치지 않게 하거나 이를 복제권에 대한 예외로서 인정될 수 있게 하자는 것에 대체적으로 동의하고 있다(최경수, 1997, 9). 아직 RAM 저장의 문제는 국제적으로 해답이 나와 있지 않은 실정이므로, 시간을 가지고 각국의 관행을 지켜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일시적 저장과 아울러 거론되고 있는 것은 화면현시의 문제이다. 전송되어온 저작물을 화면을 통해서 즉시 브라우징하는 것은 엄밀히 말하자면 RAM에 저장되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컴퓨터 화면을 통해 저작물을 현시하는 것이 복제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의견이 분분하다. 컴퓨터 화면을 통해 RAM에 저장된 정보를 불러 읽을 때마다 전시 내지 복제로 보아 저작권 침해의 책임을 물게 된다면, 이는 곧 정보권리자에게 정보 등을 배타적으로

읽을 권리(an exclusive right to read)까지 부여하는 것이어서 부당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Litman, 1994, 40).

우리나라에서는 저작권법상 저작물을 화면에 현시하는 것을 전시권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해결해 볼 수 있다는 견해가 있다(박성호, 1996, 73-74). 그리고 대다수의 이용자가 단일 스크린을 보는 경우는 '공중에 대한 전달'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아직 우리나라 현행 저작권법에는 공중전달권이 별도로 인정되지 않고 있다.

한편 화면현시의 문제는 1996년 WIPO 외교회의에서 채택된 저작권조약이나 실연 음반조약의 과정에서는 거의 논의되지 않았다.

어쨌든 저작물의 화면현시의 문제는 저작물의 RAM 저장을 복제로 인정하느냐의 여부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저작물의 RAM 저장을 복제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의 화면현시를 별도의 복제로 인정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화면에 현시되는 모든 저작물은 RAM 저장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반대로 저작물의 RAM 저장을 복제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저작물의 화면현시를 역시 복제로 인정할 가치는 없다.

따라서 저작물을 화면현시하는 것을 복제로 인정할 것인지의 문제는 저작물을 RAM 저장을 복제로 인정할 것인지에 따르는 부수적인 문제라 하겠다.

3. 2 사적 복제

고도 정보사회에서는 정보와 지식이 더욱 중요한 사회적, 경제적 가치를 지니게 됨으로써, 개인 또는 국가적 차원에서 고도의 과학기술과 관련지식 및 문화 예술 분야 등의 다종다양한 정보에 의존하는 바가 커지게 될 것이다. 더욱이 선진국으로 진입을 서두르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더욱 더 우수한 저작물의 창작과 효율적 이용이 불가결할 것이다.

그러나 저작물을 이용함에 있어서 주목해야 할 점은 우리가 가정이나 사무실 등에서 사적으로 복제하거나 수정 또는 가공하고자 하는 무수히 많은 저작물들이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라는 점이다.

현재 사적 이용을 위한 디지털복제에 관한 규정은 조문화되어 있지 않다. 때문에 기존의 사적 복제의 권리제한 규정을 그대로 네트워크환경에 적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네트워크환경에서의 디지털 사적 복제에 대한 국제적인 동향과 기존의 사적 복제 규정과 관련한 문제점을 검토하고자 한다.

베른협약 제9조는 저작자에게 배타적인 복제권을 부여하면서, 각국이 국내법으로 복제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앞에서 언급한 대로, “그러한 복제는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과 충돌하지 않아야 하며 저작자의 합법적인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9조 2항). 따라서 저작권의 제한규정으로서의 사적 복제는 저작물의 통상적

이용과 저작권자의 경제적 이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인정되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각국은 베른 협약 제9조의 정신에 합치하는 방법으로, 복제권의 제한을 별도로 두든지 아니면 사적사용 내지 공정사용의 법리를 통하여 사적 복제의 문제에 접근하고 있다. 그러나 정보사회에서 사적 이용에 대한 감시 기술이 발전할수록 사적 사용에 대한 공정사용의 법리가 적용될 여지는 점차 줄어들 수도 있다.

일본 저작권법은 제31조 1항에 의해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를 인정하고 있는 반면에, 동조 2항에서는 디지털 녹음·녹화기기로 복제한 녹음·녹화물에 한해서 저작권자에게 보상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일본 저작권심의회 멀티미디어소위원회 워킹그룹에서는 멀티미디어 시대의 저작권 대응을 위한 일환으로 기존의 저작권법의 여러 문제점을 검토하였다. 연구 결과로 제출된 멀티미디어 관련 보고서에서는, 디지털 사적 복제와 관련하여 첫째(가정용 녹음·녹화기기에 의한 복제를 제외한) 디지털 매체에 수록된 저작물을 디지털 형태로 복제하는 것에 대해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권 제한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안, 둘째(방송 등에 의하여 제공된 저작물을 포함하여) 저작물이 복제금지 또는 제한조치를 취하여 제공되는 경우, 그와 같은 기술적 조치를 해제하는 기술장치에 의한 복제에 대하여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권을 제한하지 않는 안, 셋째 컴퓨터프로그램 또는 데이터베이스 저작물

에 대해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권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안을 제시하고 있다 (일본 저작권심의회 멀티미디어소위원회 워킹그룹, 1995, 29).

우리나라 저작권의 제한 사유 가운데 오늘날 정보전달시장과 관련하여 가장 큰 문제를 야기하는 것은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고 허용한 저작권법 제27조의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 규정이다.

이에 따르면, 일반저작물의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개인적 이용을 위한 저작물의 복제는 ‘공정사용’의 하나로서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복제해도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허용규정은 가정 등의 비밀스러운 공간에서 벌어지는 사적 복제행위를 일일이 규제할 수 없을 뿐더러, 오늘날처럼 복제기술이 발달하지 아니했던 과거에는 개인적 복제로 인한 저작자의 경제적 손실이 심각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고려된 저작권의 제한사유이다.

여기서 “개인적으로 이용한다는 것”이라 함은 복사주체 자신의 이용에 한정하는 것이고, 자신의 목적을 위해 복사한 것을 제3자에게 배포하는 것까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또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이라 함은 복제물을 가정과 같은 폐쇄된 곳에서 이용하는 것으로 한정하는 것이고, 가정의 범위를 넘는 곳

에서의 복제까지를 허용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이 규정은 복제의 범위를 가정에만 한정하지 않고 가정에 준하는 한정된 곳에서도 복제를 허락하고 있으므로, 소규모의 집단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복제하는 것이 가능하다. 소규모 집단의 인원수는 명문화되어 있지 않지만, 그 인원 수를 10명 정도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저작권의 제한으로 용인되는 사적 복제의 대상저작물은 그 형태나 내용을 불문하므로,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저작물은 모두 사적 복제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디지털 시대의 사적 복제는 복제물이 원본과 거의 질적으로 차이가 없어 원저작물의 판매고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데 있다. 그리고 네트워크 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용상의 공과 사는 구별하기가 매우 어렵다. 또한 기존의 사적 복제의 허용은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대상으로 있어, 저작물이 인쇄매체로 발행되지 않고 정보통신망을 통해서만 공표되고, 동 저작물이 유료에 의해서만 이용이 가능한 경우 저작권법 제27조에 의한 사적 복제의 적용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점도 문제이다.

이와 같이 현행 저작권법 제27조의 규정은 복제물이 원본에 비해 질적으로 취약했던 아날로그 시대를 염두에 두고 마련된 규정이어서, 디지털 시대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문제가 있음이 명백히 드러났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네트워크환경에 맞게 현행 사적 복제의 허용규정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3. 도서관 등에의 복제

3. 3. 1 도서관면책

도서관은 전통적으로 각종 자료를 물리적으로 소장하고 보존하며 도서관을 찾는 이용자들에게 이를 제공하여 지식 및 정보의 전달, 생활향상, 문화적 발달에 기여해 왔을 뿐만 아니라, 평생교육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왔다. 그러나 최근 컴퓨터와 통신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도서관의 기능이 자료의 물리적 소장 쪽에서 자료의 접근 및 온라인정보 제공 쪽으로 변화하고 있다.

온라인 정보서비스를 통해 이용자는 전 세계의 정보 자료를 전자적 영상으로 받아볼 수 있으며, 자신의 컴퓨터에 저장하거나 프린터로 언제든지 뽑아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그 자료를 변형시켜 이용하는 일까지도 쉽게 할 수 있다. 때문에 종래의 도서관 내에서 이루어지는 한정된 이용범위를 넘어서 그러한 행위가 여러 곳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고 그 이용량도 증가하고 있어 저작권 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베른협약상,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은 존재하지 않지만, 동 협약 제9조 제2항을 근거로 하여 대부분의 국가들은 저작권법상에 이를 규정하고 있다.

미국 저작권법은 우리보다 훨씬 구체적으로 도서관면책을 규정하고 있다. 제108조(1988)는 여러 경우를 상정하여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저작권법상 면책되도록 하고 있다. 그 내용을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1) 저작물의 복제 또는 배포와 관련한 면책의 전제조건

첫째, 복제나 배포가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비영리 목적이어야 하고,
둘째, 도서관 자료가 일반 공중에 개방되어야 하며,

세째, 복제물에 저작권 표시가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네째, 복제물이나 음반 1부가 고립적(isolated)으로 제작되어야 한다.

따라서 다수의 복제물을 여러 사람에게 나누어 주기 위한 복제 또는 1부일지라도 조직적으로 복제하는 행위는 면책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2) 면책의 대상이 되는 경우의 복제

첫째, 복제물이나 음반이 보존과 안전을 목적으로 한 경우, 또는 연구용의 납본을 목적으로 미발행된 저작물을 모사형태(facsimile form)로 복제한 경우 (제108조(b))

이 규정에 의하면 대상자료는 인쇄매체로 된 자료만이 아니고 음반까지도 언급하고 있어, 인쇄매체 이외의 자료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미발행된 저작물을 모사형

태로 복제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마이크로 필름으로 복제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러나 문제는 디지털복제에 대해서 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둘째, 기존의 복제물이나 음반이 파손, 훼손, 분실 또는 도난 당한 경우, 공정한 가격으로 대체물을 취득할 수 없을 때 대체용 목적으로 복제한 경우 (제108조 (c))

이 경우에도 모사형태로 복제하는 것은 허용된다. 그러나 디지털복제에 대해서는 본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

세째, 저작물이나 정기간행물 기사의 일부분의 복제를 이용자가 요청한 경우 (제108조 (d))

단, 이 경우는 복제물이 이용자의 소유물이 되어야 하며, 도서관이 개인적 연구, 학문 또는 조사 이외의 목적으로 복제물이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주문을 접수하는 장소에 저작권 경고문을 명시적으로 게시하고 주문서식에 이 경고문을 포함시킨 경우에 한한다.

넷째, 이용자가 저작물의 복제물을 합법적인(fair) 가격에 취득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08조 (e))

이 경우는 한 저작물의 전부나 상당부분을 복제하는 것이 허용된다. 그러나 그 복제물이 이용자의 소유가 되어야 하고, 도서관이 개인적 연구, 학문 또는 조사 이외의 목적으로 복제물이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주문을 접수하는 장소에 저작권 경고문을 명시적으로 게시하고 그 주문서식에 이 경고문을 포함시킨

경우이어야 한다.

다섯째, 타도서관의 요청에 의한 도서관 상호대차(interlibrary loan)의 목적으로 1부의 복제물을 만들고자 하는 경우 (제108조 (g)(2))

단, 이 경우는 복제가 저작물의 구독을 대체할 정도의 총량(aggregate quantities)으로 복제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만 허용된다. 그러나 이 조항은 아날로그 시대의 저작물을 염두에 두고 허용된 것이므로 디지털 시대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제108조 마지막 (i)항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용자의 수요와의 법적 균형을 달성한 정도에 관한 보고서를 매 5년마다 국회에 제출하여 문제점에 대한 개선책을 찾고자 하는 행위를 명문화하고 있다. 저작권법의 조문 작성시 저작자, 발행인 및 저작권소유자, 도서관이용자 대표와 도서관장이 보고서 작성을 함께 협의하도록 한 점은 매우 고무적인 적절한 조치라 하겠다.

한편, NII작업반이 제출한 최종보고서의 제안에서는 도서관면책과 관련하여 보존은 물론 이용목적(단 1부)을 포함해 디지털 형식으로 복제물을 3부까지 만들 수 있도록 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그러나 본 내용은 법에 반영되지 못하고 법 개정안을 마련한 정도에 그치고 말았다. 그 이유는 이해당사자들의 이해관계가 크게 상충하므로 저작권자와 이용자 등의 합의를 얻어 내기가 어려웠기 때문이라고 본다.

일본 저작권법에서는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를 ‘제5관 저작권 제한’ 항목 하에서의 제31조에 다음과 같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는 도서관 등의 이용자의 요구에 응하여 그 조사 연구의 용도에 제공하기 위하여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발행 후 상당기간을 경과한 정기 간행물에 게재된 저작물에 있어서는 그의 전부)의 복제물을 1명에 대하여 일부 제공하는 경우(31조 1항), 도서관 등의 자료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31조 2항), 다른 도서관 등의 요구에 응하여 절판, 기타 이에 준하는 이유로 일반적으로 입수하기가 관란한 도서관 자료의 복제물을 제공하는 경우(31조 3항)이다. 그러나 도서관자료의 디지털화, 통신네트워크를 이용한 전달이나 복제물의 제공 등을 상정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네트워크와 디지털기술의 발달에 따른 저작권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 허용규정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일본 저작권심의회가 이러한 문제 등을 검토하였는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도서관에서 일반 공중이 복사 등을 통해서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에 대하여 저작자의 혜택을 받도록 하거나, 둘째 도서관 서비스(유선송신의 경우를 포함)에 대하여 보상청구권을 두자는 것이다. 또한 폭넓은 관점에서 이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후속되어야 할 것이며, 권리의 집중 관리체제의 확충이 불가피하다고 시사하고 있다 (일본 저작권심의회 멀티미디어 소위원회 워킹그룹, 1995, 30-32).

한국 저작권법도 도서관이 지식과 정보의 전달이라는 문화적 공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측면을 고려하여 도서관면책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도서관에서의 복제는 본래 저작권법이 추구하는 저작물의 전파를 통한 문화의 발달이라는 목적에 부합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의 예외로서 허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도서관에서의 복제가 저작권자의 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할 정도로 이루어진다면 저작권법이 부여하고자 하는 경제적 보상의 인센티브가 무의미하게 되어서 저작권법의 목적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따라서 우리 저작권법은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를 허용하면서도 그 요건과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여기에서 도서관 등은 도서관진흥법에 의한 도서관 및 도서·문서·기록 그 밖의 자료를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함은 ①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의 규정에 의한 공공도서관 학교도서관 및 특수도서관(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서 설립한 특수도서관은 제외)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서 도서·문서·기록 그 밖의 자료를 보존·대출 기타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 ③ 문화체육부장관이 도서·문서·기록 그 밖의 자료를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시설을 의미

한다.(저작권법 시행령 제3조)

네트워크환경에서 도서관 등에서 복제가 허용되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도서관 등은 조사·연구를 목적으로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1인 1부에 한하여 제공하는 경우 (제28조 제1항)

도서관의 면책 조항 중 네트워크환경에 적용하는데 있어서 의견이 가장 크게 대립되고 있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본 조항은 복제의 허용을 조사·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이용자에게만 한정하고 있다. 때문에 공중의 복제 요구가 제한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그리고 현행법은 도서관에서의 복제를 일부 복제에 한하고 있다. 그러나 디지털복제인 경우에는 일부 복제를 통제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디지털 시대에서 복제단위를 1부로 제한한다는 것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 또한 디지털복제는 절에 있어서 원본과 같고 비용이 훨씬 적게 든다. 따라서 복제에 일정한 대가 지급을 전제로 허용한다든가 또는 이를 제한하지 않는다면, 디지털저작물에 대한 저작권보호는 매우 어려울 것이다.

둘째, 도서관 등이 자료의 자체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28조 제2항)

인쇄자료의 경우 희귀본이나 귀중도서 등 그 가치가 큰 자료는 자체 보존을 위하여 복제가 허용된다. 그러나 이것은 인쇄형태의 원본이 지니는 특성을 고려하여 마련된 규정이라 할 수 있다. 때문에 귀중하거나 희귀하여 그 가치가 큰 디지털 형

태의 자료를 자체 보존하기 위하여 일정한 보상없이 도서관에서 복제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무리이다.

세째, 다른 도서관 등의 요구에 따라 절판 등의 사유로 인하여 구하기 어려운 저작물의 복제물을 보존용으로 제공하는 경우 (제28조 제3항)

이 규정은 인쇄저작물의 경우 그 유통과정상의 저작물의 절판이 발생할 가능성을 고려한 적절한 배려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디지털시대에서는 유통상 인쇄자료의 경우와 같은 절판 등의 사정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 따라서 저작물의 유통이 아날로그 환경과는 크게 다른 현시점에서 볼 때, 본 조항은 디지털 형태의 저작물에 적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이와 같이 현행 도서관정책의 규정을 디지털도서관의 정보서비스행위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따라서 관련규정의 법 개정이 시급하다.

3. 3. 2 디지털저작물의 온라인 제공 및 대출의 문제

이제까지 도서관은 제한된 정보이용자에게 무상으로 자료를 대출 또는 제공해 왔다. 그리하여 도서관은 공익을 위해 일반공중에게 정보봉사를 제공하는 사회적 장치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다. 이러한 도서관의 전통적인 기본역할은 디지털환경에서도 더욱 발전적인 방향으로 이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러나 디지털저작물은 주로 온라인으로 무제한의 공중에게 제공되며, 항상 재

복제가 손쉽게 이루어지거나 이를 쉽게 변형시켜 유통시킬 위험이 상존한다. 때문에 무제한 또는 무상의 제공은 저작권자의 이익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다.

결국 도서관으로부터 디지털저작물을 온라인으로 제공받거나 대출받은 후 사용자의 재복제 및 재가공 또는 변형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도서관에서의 디지털저작물의 무상대출 및 무상의 온라인 제공의 범위를 명시적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

최근 WIPO 저작권 조약에서는 디지털 환경에서 발생하는 이용행위의 하나인 디지털송신과 관련된 문제를 베른협약 상의 공중 전달 (communication to the public)의 개념을 확장하여 해결하였다. 제8조에서 저작자는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장소와 시간에 저작물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을 포함하여, 유선 또는 무선의 수단에 의하여 저작물을 전달하는 것을 허락할 배타적인 권리를 항유한다”고 규정하였다. 이러한 공중전달권은 쌍방향 송신을 감안한 것으로, 정보를 통신망에 올리는 행위와 이를 송신하는 행위 모두를 염두에 두고 있다.

한편 도서관에서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자유로이 제공할 수 있는 디지털 저작물은 다음과 같다.

저작권법상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로
 ① 법령 ② 국가나 지방공공단체의 고시 · 훈령 · 공고 ③ 법원의 판결 · 결정 · 명령 및 판결이나 행정 · 심판 · 절차 그밖의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 · 결정 등
 ④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상기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⑤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⑥ 공개한 법정 국회 또는 지방의회에서의 연설 등이다.(제7조) 그러나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이라 하더라도 이들을 선택, 배열함에 있어서 창작성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편집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으므로 이점은 주의를 요한다. 이외에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 수치 등의 단순정보, 단순 서지정보 등이 이에 포함된다.

3. 4 학교교육목적 상에의 복제

저작물의 학교교육 목적상 복제는 공익을 도모하고 국가의 문화발달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저작권법의 목적에 부합되므로, 그러한 이용에 대해서는 저작권자의 배타적인 권리가 제한된다.

베른협약 제10조 2항은 교수목적을 위하여 문학적 또는 예술적 저작물을 설명자료로서 발행, 방송 및 녹음, 녹화에 사용하는 경우 저작권자의 권리제한 여부를 체약국에 일임하고 있다.

미국 저작권법 제110조 1항은 교사나 학생이 교육을 위하여 시설된 교실 등의 비영리 교육기관의 대면교육활동(face-to-face teaching activities) 과정 중 저작물을 실연 (performance) 또는 전시 (display)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2항은 그 조건으로서 (1) 그 실연이나 전시가 비영리 교육기관의 조직적이

고 정규적인 교육활동의 일부인 경우 (2) 그 실연이나 전시가 송신되는 교수내용과 직접 관련되거나 실질적인 보조자료가 되는 경우 (3) 송신이 교실이나 이와 유사한 장소에서의 수신을 위하여 행해지거나, 신체장애 또는 기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송신의 대상이 되는 자에 의한 수신인 경우 실연을 송신하거나 저작물을 전시할 수 있게 허용하고 있다. 이와 같이 미국 저작권법은 교육기관에서의 수업상 필요한 실연(송신을 포함)과 현시를 면책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복제는 그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앞으로 초고속통신망 및 멀티미디어화는 더욱 발달할 것으로 원격교육 역시 더욱 보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현행 미국 저작권법의 제110조를 문언해석할 경우 원격교육에 대한 명시적인 조항이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면책의 적용여부가 의문시된다.

한편 아날로그 환경에서의 학급 내에서의 교사가 할 수 있는 복제의 범위에 관한 공정사용의 가이드라인은 CONTU(National Commission on New Technological Uses of Copyrighted Works)에 의해 제시되어 있다. 그러나 네트워크 환경에서의 디지털 저작물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문제가 있다는 판단하에, 최근 공정사용에 관한 협의회(Conference on Fair Use : CONFU)가 구성되었고, 그 소위원회에서 원격교육에 적용될 수 있는 가이드라인안(Proposal for Fair Use Guidelines for Distance Learning)이 1996년 11월에 제출되어 있

는 상태이다.

일본 저작권법은 제5관 저작권의 제한 내에서의 제35조에 학교 기타 교육기관에서의 복제라는 조항을 규정하여 복제를 허용하고 있다. 이 조항에 의하면 “학교, 기타 교육기관(영리를 목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것은 제외)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자는 그 수업과정에서 사용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한도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다. 다만, 당해저작물의 종류와 용도 및 그 복제의 부수 그리고 양태에 비추어 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게 되는 경우는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그 조건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국 저작권법은 제23조에서 학교에서 수업의 목적으로 교과용 도서에 저작물을 게재하거나 기타 복제, 방송할 수 있도록 저작권을 제한하고 있다. 그 제1항에 의하면,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교육목적상 필요한 교과용 도서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게재할 수 있다”고 허용하고 있으며, 제2항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되었거나 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은 그 교육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표된 저작물을 방송하거나 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교육목적상 이용이 인정되는 범위를 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전체 학교 단위로 복제물을 배포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그리고 제2항에서 말하는 교육기관이란 고등학교 이하의 각종 학교, 전문대학, 대학(교), 대학원 등을

포함하며, 한국직업훈련관리공단, 각종 기능대학, 그리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 등을 포함한다. 그래서 영리 목적의 법인이 설립한 교육기관은 제외된다.

또한 제3항에서는 “제1항 및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문화체육부장관이 제82조 제1호에 의한 보상금의 기준에 의하여 정하여 고시한 보상금을 저작권자에게 지급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공탁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부장관이 저작권을 가지거나 교육부장관의 검·인정을 받은 교육용 도서와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학교에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이나 복제를 하는 경우에는 보상금 지급이 면제된다”고 그 범위를 밝히고 있다.

그러나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교육목적상 필요한 디지털 형태의 교과서를 제작하는데 공표된 저작물을 보상금 지급없이 복제 및 게재할 수 있는지 또는 대학 등의 교육기관이 교수목적을 위하여 공표된 디지털 형태의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방송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이러한 의문이 제기되는 것은 현행법상 그 허용범위가 불명확한데서 기인한다. 또한 우리나라로 앞으로 원격교육이 활성화 될 터인데, 현행 저작권법에는 이를 대비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법 개정 또는 법적 정비가 요구된다.

4. 디지털복제에 대한 제도적 통제방안

4. 1 복제보상의 필요성

최근 복사기, 녹음기, 컴퓨터 등의 복제 기술이 급속히 발전함에 따라서 가정이나 사무실 또는 학교교실이나 도서관 등에서 저작물의 복제와 변경이 아주 용이하게 이루어지고 되고,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터넷 등의 광역네트워크를 통해 전세계적으로 순식간에 유통됨으로써, 저작권자 또는 제작자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높아지게 되었다는 점은 이미 강조한 바이다.

저작권침해에 대한 적절한 규제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다수의 소액 저작물 이용자에 대한 저작권 행사에 지나치게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면, 저작자는 창작의욕을 잃고 차라리 타인의 저작물을 모방하려고 할 것이고, 일반 소비자들도 저작물 이용자로서 항상 저작권 침해의 죄의식 속에서 불안감을 안고 저작물을 이용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원저작물의 저작권자, 디지털저작물의 제작자의 권리를 충실히 보호하여 저작물의 창작을 진작시키고 동시에 저작물 이용자로부터 저작권 침해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저렴하고 신속하게 저작물을 복제 및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효율적인 제도의 마련이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디지

털 형태의 사적 복제를 현행법 제27조의 적용으로부터 배제하거나, 디지털 형태의 복제를 예방하기 위하여 기술적 조치를 취하거나, 또는 디지털 형태의 복제를 인정하되 사적 복제 보상을 위한 부과금제도(levy system)나 사적 복제에 관한 보상금 지급을 위한 저작권집중관리제도 (collective management systems of copyright)의 활성화 등 여러 방안이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일각에서는 저작물의 원활한 이용 측면을 고려하여 사적 이용을 위한 디지털복제에 대해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도록 하는 방법보다는 디지털 형태의 저작물의 복제를 금지하는 기술적 조치를 취하는 방법이 나을 것이라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디지털 형태의 복제를 사적 복제의 대상에서 제외시키거나 디지털 형태의 저작물에 기술적 조치를 취하는 방법을 한 방법으로 고려할 수는 있겠지만, 저작권자의 보호와 저작물의 원활한 이용이라는 양측면을 동시에 고려하고 있는 부과금제도를 도입하거나 또는 저작권집중관리제도를 활성화하는 방법이 보다 바람직할 것이다.

4. 2 복제보상의 방법론

세계 각국에서 사적복제를 통제하기 위해 채용하고 있는 보상제도는 나라마다 상이하지만, 다음과 같이 크게 두 갈래로 구분할 수 있다.

4. 2. 1 계약제(voluntary system)

이 제도는 주로 영미법계의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서, 사적 복제보상금을 징수하는 단체와 복사기를 사용하는 기업체 학교 복사업소와 저작물 복사 이용허락 계약서를 작성하여 정기적으로 보상금을 복사권 관리단체에 지급하고 이 단체가 수수료를 공제하고 저작자에게 분배하는 방식이다. 예로서 미국의 저작권집중관리센터(CCC: Copyright Clearance Center)는 복제허락도 하고 보상금도 징수하여 분배하고 있으며, 영국의 저작권관리단체 (CLA: Copyright Licensing Agency)는 각 기업 및 교육기관들과 복제보상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협의를 시작하였고, 일본의 경우에는 일본복사권센터가 이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한편 후술될 부과금제도의 경우는 생산된 복제기기로 타인의 저작물을 실제로 복사하지 않는 경우에도 부과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지만, 계약제는 이러한 경우를 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에 계약제는 보상금 징수단체와 복사허락계약을 체결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과 기업체 등이 계약체결에 응하지 않거나 기피하면 보상금을 받기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4. 2. 2 부과금제도 (levy system)

부과금제도는 녹음기, 녹화기, 복사기기 등 복제기기나 복사지, 공테이프와 같은 복제기재에 대하여 보상금을 부과하는 방법으로서, 보상금을 징수하는데 있어서 징수단체와 복사기 운용자 간에 계약이 필

요하지 않기 때문에 보상금의 징수가 용이하다.

이 제도는 독일(1965년)에서 처음 시도되었고, 프랑스(1975년), 스위스(1975년) 등 세계 약 20 여개국에서 사적 복제에 대한 실용적인 해결방안으로서 폭넓게 도입되어 있다.

녹음·녹화·콘테이프를 주대상으로 부과금제도를 법제화한 나라들로는 오스트리아(1980년), 노르웨이(1981년), 헝가리(1981년), 스웨덴(1982년), 콩고(1982년), 필란드(1984년), 아이슬란드(1984년), 포르투갈(1985년), 스페인(1987년), 오스트레일리아(1989년), 네덜란드(1989년), 불가리아(1991년), 체코슬로바키아(1991년) 등이 있다.

독일에서는 녹음기·녹화기에 대해서는 기기부과금과 기재부과금(독일저작권법 제54조 1항)을 지급하고, 복사기에 대해서는 기기부과금(제54조 2항 전단)이외에 운용자부과금(제54조 2항 후단)을 지급한다. 징수기관은 ZP (Zentralstelle für Uberspielungsrechte)이고, 그 업무는 GEMA(독일음악저작권협회)에 위임되어 있다(황적인, 사적복제보상금제도의 입법방향, 16).

한편 미국은 자발적인 복제보상계약에 의존하면서도, 예외적으로 디지털 오디오 복제에 관하여는 1992년 가정녹음법(Audio Home Recording Act)을 제정하여 디지털오디오 장비에 대하여 부과금을 징수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또한 일본도 1992년 12월 저작권법 개정(1993년 6

월 1일자로 시행)으로 디지털 녹음·녹화기기와 기재에 부과금제도를 도입하였다. 한편 영국과 우리나라(1993년)도 부과금 제도의 도입을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한 바 있었으나, 제조업계에 재정적 부담을 줄지 모른다는 우려로 인하여 국회에서 채택되지 못하였다.

4. 3 저작권집중관리제도

디지털시대의 정보이용자의 원활하고 자유로운 정보이용을 위해서는 저작권법의 개정과 아울러 도서관에서의 복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저작물 전부복제 또는 1인 1부를 넘는 다량복제의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 요구된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서 저작권집중관리제도의 연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정보제공자가 저작물을 정보통신망에 올리기 위해서나 일반 정보이용자가 통신망에 올려진 디지털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저작자와 이용자, 그리고 다수의 매개자가 관련을 맺게 된다. 이 때 저작자의 권리가 침해하지 않고 디지털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정보제공자든 일반 공중이든 저작자로부터 각종 권리의 전부나 일부를 양도받거나 이용허락을 받아서 저작물을 이용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이용자가 저작권자와의 개별계약을 통해서 저작권 처리를 하여야 하나, 이것은 매우 번거롭고 불편하며 이용자체를 불가능하게 할 우려도 있다. 이러한 점에서 저작권자를 대신하여 집중관리단체가

이용자에게 일괄적으로 복제를 허락하고 동시에 일정한 사용료를 징수하여 이를 저작권자에게 분배하는 저작권집중관리제도가 요구되는 것이다.

저작권집중관리제도는 권리자의 권익과 이용자의 이용편의라는 양자의 이익을 모두 도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저작물의 이용관리에도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다. 따라서 초고속정보통신망의 구축을 추진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에서 디지털 학술정보의 복제 또는 송신 및 배포 등과 관련한 이용허락을 주관할 수 있는 저작권집중관리제도를 확립하여 그 업무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멀티미디어형태 저작물의 원저작자 권리를 충실히 보호해 주기 위해서는 어문 저작물과 음악저작물 및 영상저작물 모두를 포괄하는 저작권집중관리가 이루어지는 것이 이상적이겠지만, 이제까지의 한국 음반협회,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문예 학술저작권협회 등의 저작권신탁관리업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볼 때, 그러한 이상적인 저작권집중관리기구를 기대하기란 어렵다고 본다.

저작권집중관리업무는 공익적 성격을 기지므로 더 이상 지금처럼 사적자치에 일임하기보다는 국가기관으로서의 집중 관리기관을 설립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모든 저작물을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정상기, 1997, 40).

또한 이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 및 시행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의 이름과 주소,

저작물의 이용허락조건 및 이용기간 등과 같은 저작권 관리정보를 담고 있는 저작권관리데이터베이스의 개발과 권리의 관리정보를 온라인으로 검색할 수 있는 저작권관리정보시스템의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를 현실화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한편 디지털저작물의 이용이 공정사용에 해당되지 않아 면책의 조건을 받지 못하는 경우, 또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얻기 위해 저작권자를 찾는데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저작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법정허락' (legal license)에 의거하여 법률이 정한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권한있는 기관(이를 테면 문화체육부)이 정한 보상금을 지급하고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4. 4 사적복제보상금제도

디지털기술의 발달에 따른 복제 보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또 다른 한 가지 개선방안은 녹음기 및 VTR 등에 대하여 사적복제보상금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취지에서 개인용 컴퓨터와 모뎀 등의 각종 통신장비에 대하여 사적 복제보상금을 부과하는 방안이다. 이 방안은 사적 복제, 교육기관 및 도서관에서의 복제에 포괄적 저작권집중관리제도를 도입하기 어려운 경우에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그리고 만약 부과금제도를 채택하기로 한다면, 그 도입을 위해서는 첫째, 사적 복제의 범위를 어떻게 한정할 것인지, 둘째, 어떠한 종류의 사적 복제를 보상금제도에 편입할 것인지 셋째, 보상금의 관리와 분배는 어떻게 할 것인지 즉, 관리단체를 하나로 할 것인지, 복수로 할 것인지, 분배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또한 분배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할 것인지, 그리고 문화기금을 둘 것인지 말 것인지, 문화기금을 둔다면 그 목적사업을 무엇으로 할 것인지 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5. 결 론

종이형태 기반 저작물의 디지털화가 가속화되고, 학교, 도서관, 가정이나 사무실에서의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한 디지털저작물의 이용이 일반화됨에 따라, 저작권의 새로운 도전으로 부각되고 있는 디지털복제와 그와 관련한 공정사용 법리 적용상의 문제점을 살펴 보았다.

저작권법에서는 저작자의 재산상의 독점권을 일정한 경우에 제한하여 원활한 정보이용 및 정보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저작권의 제한 또는 공정사용의 법리를 적용하고 있다.

디지털 환경에서도 아날로그 환경과 마찬가지로 공공의 이익과 문화발전을 위하여 일정한 경우에 한하여 저작권을 적절

히 제한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이에 국제적인 저작권 관련 협약과 미국과 일본을 위시한 각국의 저작권법을 검토한 결과 일정한 조건에 한하여 저작물의 자유로운 이용을 허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디지털복제는 신속하고 용이하며 원본과 질에 있어서 하등의 차이가 없으며 네트워크를 통해 전세계적으로 전송 및 배포될 수 있다는 점에서 과거의 아날로그 방식의 복제와는 달리 그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 최근 RAM 저장과 화면현시에 대한 복제권의 적용 여부가 국제적인 쟁점이 되고 있는데, RAM 저장을 복제범위에 포함시킬 것인가를 놓고는 아직 국제적으로 해답이 나와 있지 않다. 그러나 일시적 저장을 복제의 범주에 포함시킬 경우 경제·사회에 미칠 그 파급효과는 엄청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제22조 내지 제35조에 걸쳐 저작권의 제한 또는 공정사용의 법리가 적용되고 있다. 그래서 교육기관에서 교육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고, 도서관이 그 이용자의 요구에 의하여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할 수 있으며, 또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 복제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 저작권법상의 저작권 제한은 디지털복제 기술의 대중화와 네트워크가 정비되기 이전의 아날로그 환경에서 만들어진 제도이다. 때문에 사적 복제, 도

서관 등에서의 복제, 학교교육목적상에의 복제 규정을 디지털 환경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음이 명백히 드러났다.

따라서 네트워크 환경에서의 정보이용자의 원활하고 자유로운 정보이용을 도모하면서 저작권자의 경제적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현행 저작권 제한의 관련 규정이 개정되어야 한다.

또한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재택근무 및 재택강의 등으로 물리적 공간의 개념이 무의미해지고 있는 현실에서 저작권법만으로 사적 복제를 통제하기란 매우 어렵다. 따라서 사적 복제의 경우 법적 장치와 아울러 저작권자에게 적절한 복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자유로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효율적인 복제 보상금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자율적인 복제보상의 방안으로 저작권

집중관리제도를 활성화하는 방안과, 포괄적 집중관리제도의 도입이 어려운 경우 개인용 컴퓨터와 모뎀 등의 각종 통신장비에 대하여 사적 복제보상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저작물 권리자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보다 원활한 디지털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자의 자유로운 정보 이용을 도모하는 것이 정보중개자(검색자) 또는 정보제공자로서, 정보유통의 일익을 담당하는 우리 사서의 역할이자 책임이다. 이제 도서관인들도 디지털 도서관의 구축과 온라인 정보서비스에 관련한 저작권 문제에 미온적인 자세를 지양하고, 우리의 목소리를 저작권법 개정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디지털저작물에 관한 저작권 연구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며, 후속 연구가 지속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멀티미디어 시대의 저작권 대책. 1996. 서
울: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미국 NII 지적소유권 작업반. 임원선 옮김.
1996. 초고속통신망과 저작권.
박문석. 멀티미디어와 현대저작권법. 서
울: 지식산업사, 1997.
박성호. 1996. “정보의 디지털화에 따른
저작재산권의 대응방향.” 계간 저
작권. 35 : 65-74
윤선영. 1997. 멀티미디어 저작물의 저작

- 권 보호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 박사학위논문
이두영 · 홍재현. 1996. “디지털 저작물의
저작권 집중관리제도에 관한 연
구.” 정보관리학회지. 13(2) :
189-221.
이상정. 1996. “이용자를 위한 디지털 시
대의 저작권.” 계간 저작권. 가을
호. 35 : 75-83.
이중한. 1997. 사적 복제보상금제도의 도

- 임의 의의. [사적 복제보상금제도] 내에 수록. 32-40.
- 일본 저작권심의회 멀티미디어소위원회 워킹그룹. 멀티미디어 관련 제도 상의 문제에 대하여. 1995.
- 著作權關係法令集. 東京: 著作權資料協會, 平成元年.
- 정상조. 1997. 멀티미디어시대의 사적 복제보상금제도. [사적 복제보상금제도] 내에 수록. 107-124.
- _____. 1994. “전자출판물의 발전과 저작권법의 대응”. 계간 저작권. 겨울호.
- 최경수. 1997. 전자저작물에 대한 저작권법의 국제동향; WIPO를 중심으로. 1997년도 정보관리강좌 [디지털저작물과 저작권문제]내에 수록. 3-14.
- _____. 사적 복제보상금제도를 둘러싼 환경 변화와 그 도입을 위한 실태조사의 중요성. [사적 복제보상금제도] 내에 수록. 86-92.
- 최경수 역. 1994. 저작물의 새로운 기술적 이용에 관한 국립위원회의 최종 보고서(CONTU). 서울: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 홍봉주. 저작물의 공정한 권리보호를 위한 사적 복제보상금제도의 도입. [사적 복제보상금제도] 내에 수록. 67-85.
- 홍재현. 1997. 네트워크 환경에서의 디지털저작물 : 공정사용과 도서관면책을 중심으로. 1997년도 정보관 리강좌 - 디지털저작물과 저작권 문제. (미간행물) 41-71.
- _____. 1996. “디지털 시대의 전자복제와 관련된 저작권 문제.” 도서관. 51(4) : 56-80.
- 황적인. 1997. 사적 복제보상금제도의 입법방향. [사적 복제보상금제도] 내에 수록. 11-31.
- Bintliff, Barbara. 1995. copyright @help! Copyright and Library Internet Use. Colorado Libraries. Fall. 20-24.
- Fair Use Test. <http://www.bendict.com/fairtest.htm#test>. <http://www.gcwf.com/ftp/ipnii.tx>
- Litman, Jessica. 1994. “The Exclusive Right to Read.” CARDOZO Arts & Entertainment Law Journal. 13 : 40.
- Model Policy Concerning College and University Photocopying for Classroom, Research and Library Reserve Use. <http://www.cni.org/docs/infopols/www/ALA.html#ii>.
- NII Copyright Protection Act of 1995. <http://www.lib.usc.edu/Info/Lectures/h2441-ih.tx>.
- Part II - Standards Concerning the Availability, Scope and Use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 _____. Section 1 : Copyright and

- Related Rights. <http://www.wto.org/intellic/4-ipstan.htm>.
- Reproduction of Copyrighted Works by Educators and Libraries. <gopher://marvel.loc.gov:70/00/ftppub/copyright/circs/circ2.htm>
- Risher, Carol A. 1993. Copyright and New Technolngy, presented to "International Simposium on the Prospects for the Book in the Age of Multi-media" 17-19 November Seoul, : 6-8.
- WIPO Copyright Treaty. <http://www.loc.gov/copyright/treaty1.htm>.